

# 수의계약 사유서

## □ 용역개요

- 목적 : 급경사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측기기 설치 전·후 시운전을 통한 상시계측관리 체계 신뢰성 확보

###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(한국급경사지의 업무)

1. 급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의 실시
2. 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,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
3.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
4.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
5.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
6.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

## □ 계약상대자

- 기관명 : 특수법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
- 주 소 :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, 디펠리체 1002호
- 사업자등록번호 : 505-82-12007
- 대 표 : 전 상 름

## □ 적용법률 및 조문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4호 자목
  - 특정인의 기술·품질이나 경험·자격이 필요한 조사·설계·감리·특수측량·훈련·시설관리·교육·행사·정보이용·의상(의류)구매 계약을 체결하

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## □ 수의계약 사유

-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행정안전부로 부터 설립허가(붙임 1)를 받아 급경사지 조사, 분석 및 재해위험도 평가, 상시계측관리 등의 전문 인력 및 관련 실적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임(붙임 2)
- (행정안전부 협조공문) 문서번호 “재난경감과-4807(2020.12.02.)호” 관련하여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활용하도록 명시(붙임 3)되어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되므로 수의계약 당사자로 선정함
- 행정안전부 「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사업 가이드라인」 계측기기 설치 전·후 시운전 과정 중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명시

(참고) 행정안전부 「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사업 가이드라인」

### 4 설계 및 시공

- 사업추진 근거에 따라 설계 및 시공 시 주요 검토사항 확인
- 검수 및 시운전의 경우 「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」와 협의(발주기관 또는 사업자)

< 관계기관(행정안전부 및 시도)의 상황 확인【시스템 구축시】 >

- ① 관계기관은 상황전파 결과를 관련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
- ② 관계기관은 외부망을 통해 해당 관리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원격 접속하여 계측DB, CCTV 영상 등을 우회 확인
  - \* 지자체는 관계기관이 외부망을 통해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축
- ③ 전문기관(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)은 외부망을 통해 지자체 운영시스템에 원격 접속하여 계측 DB 분석, 현장 긴급 조사, 정밀 점검 등 시행

## 5 준 공

- 상시계측관리 체계의 품질확인 및 검수를 위하여 주요 검토사항 확인
- 「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」 등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준공처리

## 6 유지관리

- 상시계측관리는 조기경보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이 주목적이므로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고, 이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됨
- ‘재난관리기금’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「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」 등 관계 전문가에게 대행하여 유지관리의 전문성 확보

### ○ 상황단계별 주요 행동 요령

상황단계	관리기관 (지방자치단체)	전문기관 지원 (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)
관심 (정상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피소, 대피로 등 점검</li> <li>- 계측기 정기 점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측 DB 관리 및 월간보고서</li> <li>- 계측기 정밀 점검 및 보수</li> </ul>
주의 (징후 포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황 파악, CCTV 관찰</li> <li>- 비상연락망 가동</li> <li>- 필요시 현장 순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측 DB 정밀 분석</li> <li>- 지자체에 긴급 상황 보고</li> <li>- 필요시 현장 긴급 조사</li> </ul>
경계 (경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황판단 회의</li> <li>- 순찰 강화, 대피소 개방</li> <li>- 경찰, 소방서 등 협조 요청</li> <li>- 주민에게 대피 준비 긴급 안내</li> <li>- 필요시 경계 생략, 심각 추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황판단 자료작성 지원</li> <li>- 현장 긴급 조사</li> <li>- 계측 DB 지속 관찰</li> </ul>
심각 (대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대피실시</li> <li>- 경찰, 소방서 등 긴급 지원 요청</li> <li>- 붕괴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대책 수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붕괴 발생 시 원인조사 실시</li> <li>- 긴급조치 및 대책 수립 지원</li> </ul>

※ 단계별 세부내용은 「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·운영 지침」 참조

- 행정안전부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 의한 국내 유일한 급경사지 계측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(붙임 4)